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국제 협력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되고,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 및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휴양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 중 “신규조림·재조림(A/R CDM)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에 관한 사항”을 “신규조림·재조림(A/R SDM)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19”를 “3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3”을 “317”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0”을 “75”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3”을 “6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32”를 “3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26”을 “33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1”을 “76”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4”를 “63”으로 한다.

별표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 다음에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임업주사 “5”를 “4”로 한다.

별표 6의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 다음에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임업주사 “5”를 “4”로 한다.

별표 6의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

업연구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을 “2”로 한다.

별표 6의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을 “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29”를 “7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29”를 “73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8”을 “11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736”을 “737”로 하고, 일반직 계 “736”을 “737”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7”을 “118”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66”을 “67”로 하고, 일반직 계 “66”을 “67”로 하며, 4급 이하 “65”를 “6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98”을 “99”로 하고, 일반직 계 “98”을 “99”로 하며, 5급 이하 “97”을 “98”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 ③ (생략)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외자원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 좌한다.	④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감 축·흡수증진(REDD+) 및 <u>신</u> <u>규조림·재조림(A/R CDM)을</u> <u>통한 산림탄소배출권에 관한</u> <u>사항</u>	6. ----- ----- ----- <u>신</u> <u>규조림·재조림(A/R SDM) 등</u> <u>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u> <u>· 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수립</u> <u>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u>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319</u>	<u>323</u>	+4
·	·	·	
·	·	·	
일반직 계	<u>313</u>	<u>317</u>	+4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70</u>	<u>75</u>	+5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3</u>	<u>62</u>	-1
·	·	·	
·	·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2</u>	<u>336</u>	+4
•	•	•	
•	•	•	
일반직 계	<u>326</u>	<u>330</u>	+4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71</u>	<u>76</u>	+5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4</u>	<u>63</u>	-1
•	•	•	
•	•	•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임업사무관</u>			<u><신</u>	<u>설></u>	<u>1</u>		+1
	•		•		•		
	•		•		•		
임업주사			<u>5</u>		<u>4</u>		-1
	•		•		•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임업주사		<u>5</u>	<u>4</u>		-1
		•		•	•		
		•		•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3</u>	<u>2</u>	-1
•	•	•	
•	•	•	

[별표 6의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3</u>	<u>2</u>	-1
•	•	•	
•	•	•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29</u>	<u>730</u>	+1
일반직 계	<u>729</u>	<u>730</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8</u>	<u>119</u>	+1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36</u>	<u>737</u>	+1
일반직 계	<u>736</u>	<u>737</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7</u>	<u>118</u>	+1
·	·	·	
·	·	·	

[별표 8의2]

국립수목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u>	<u>67</u>	+1
일반직 계	<u>66</u>	<u>67</u>	+1
·	·	·	
4급 이하	<u>65</u>	<u>66</u>	+1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8</u>	<u>99</u>	+1
일반직 계	<u>98</u>	<u>99</u>	+1
·	·	·	
5급 이하	<u>97</u>	<u>98</u>	+1